

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교부용) 개정대비표

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(교부용)	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(교부용)	
제 1 조 (적용범위) ~ 제 7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용도) (기재생략)	제 1 조 (적용범위) ~ 제 7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용도) (기재생략)	
제 8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절차) ①~③ (기재생략) ④ 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. (신설)	제 8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절차) ①~③ (기재생략) ④ 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. ⑤ 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이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.	문구수정 “하도급법”에 따른 지연이자 부담의무 반영
제 9 조 (결제방법) ~ 제 17 조 (이의 제기) (기재생략)	제 9 조 (결제방법) ~ 제 17 조 (이의 제기) (기재생략)	
제 18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① (기재생략)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금융결제원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을 적용합니다.	제 18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① (기재생략)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, 「전자서명법」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금융결제원 「B2B 규약」 및 동 「시행세칙」,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을 적용합니다.	문구수정 (관련 법령 추가)
제 19 조 (준거법) (기재생략)	제 19 조 (준거법) (기재생략)	

--	--	--

2. 개정시행일: 2018년 11월 30일

3.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개정 약관 적용 여부: 적용